

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  
(제20조제3항 관련)

1. 일반응시자

교육과목 및 시간		
교육과정	이론교육	기능교육
가. 디젤차량 운전면허 (810)	·철도관련법(50) ·철도시스템 일반(60) ·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(170) ·운전이론 일반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3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340시간	470시간
나. 제1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(810)	·철도관련법(50) ·철도시스템 일반(60) ·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(170) ·운전이론 일반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3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340시간	470시간
다.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(680)	·철도관련법(40) ·도시철도시스템 일반(45) ·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(100) ·운전이론 일반(2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3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240시간	440시간
라. 철도장비 운전면허 (340)	·철도관련법(50) ·철도시스템 일반(40) ·기계·장비의 구조 및 기능(6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2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170시간	170시간
마. 노면전차 운전면허 (440)	·철도관련법(50) ·노면전차 시스템 일반(40) 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8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3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200시간	240시간

\*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.

2. 운전면허 소지자

( ) : 시간

소지면허	교육과목 및 시간			
	교육과정	이론교육	기능교육	
가. 디젤차량운전면허·제1종전기차량 운전면허·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	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(420)	·고속철도 시스템 일반(15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	
		·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(85) ·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(10) ·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(2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	
		140시간	280시간	
나. 디젤차량운전면허	1)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(85)	·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(4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	
		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	
			50시간	35시간
	2)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(85)	·도시철도 시스템 일반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	
		·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	
			50시간	35시간
3) 노면전차운전면허(60)	·노면전차 시스템 일반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		
	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2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5)			
		40시간	20시간	
다.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	1) 디젤차량운전면허(85)	·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(4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	
		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	
			50시간	35시간
	2)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(85)	·도시철도 시스템 일반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	
		·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	
			50시간	35시간
3) 노면전차운전면허(50)	·노면전차 시스템 일반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		
	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1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5)			

		30시간	20시간
라.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	1) 디젤차량 운전면허 (130)	·철도시스템 일반(10) ·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(4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 합) 등(5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 련
		60시간	70시간
	2) 제1종 전기 차량운 전면허 (130)	·철도시스템 일반(10) ·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(4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 합) 등(5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 련
		60시간	70시간
	3) 노면전차 운전면허 (50)	·노면전차 시스템 일반(10) 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1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 합) 등(5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 련
		30시간	20시간
마. 철도장비 운전면허	1) 디젤차량 운전면허 (460)	·철도관련법(30) ·철도시스템 일반(30) ·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(100) ·운전이론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 합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 련 ·비상시 조치 등
		200시간	260시간
	2) 제1종 전 기 차량운전 면허 (460)	·철도관련법(30) ·철도시스템 일반(30) ·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(100) ·운전이론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 합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 련 ·비상시 조치 등
		200시간	260시간
3) 제2종 전 기 차량운전 면허 (340)	·철도관련법(30) ·도시철도시스템 일반(30) ·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(70) ·운전이론(2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 합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 련 ·비상시 조치 등	
	165시간	175시간	
	4) 노면전차	·철도관련법(30)	·현장실습교육

	운전면허 (220)	·노면전차시스템 일반(20) 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6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120시간	100시간
바. 노면전차 운전면허	1) 디젤차량 운전면허 (320)	·철도관련법(30) ·철도시스템 일반(30) ·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(100) ·운전이론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200시간	120시간
	2) 제1종 전 기 차량운전 면허 (320)	·철도관련법(30) ·철도시스템 일반(30) ·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(100) ·운전이론(3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200시간	120시간
	3) 제2종 전 기 차량운전 면허 (275)	·철도관련법(30) ·도시철도시스템 일반(30) ·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(70) ·운전이론(25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165시간	110시간
	4) 철도장비 운전면허 (165)	·철도관련법(30) ·철도시스템 일반(20) ·기계·장비의 구조 및 기능(6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120시간	45시간

\*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.

### 3. 관제자격증명 취득자

( ): 시간

소지면허	교육과목 및 시간		
	교육과정	이론교육	기능교육
가. 철도 관	1) 디젤차	·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	· 현장실습교육

제 자격 증명	량 운전 면허 (260)	(100) · 운전이론(3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140시간	120시간
	2) 제1종 전기 차량 운전 면허 (260)	·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(100) · 운전이론(3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140시간	120시간
	3) 제2종 전기 차량 운전 면허 (215)	·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(70) · 운전이론(25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105시간	110시간	
나. 도시철도 관 제 자 격 증 명	4) 철도장 비 운전 면허 (115)	· 기계·장비의 구조 및 기능 (6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70시간	45시간
	5) 노면전 차 운전 면허 (170)	·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6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70시간	100시간
	1) 디젤차 량 운전 면허 (290)	· 철도시스템 일반(30) ·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 (100) · 운전이론(3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170시간	120시간	
	2) 제1종 전기 차량 운전 면 허	· 철도시스템 일반(30) ·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(100) · 운전이론(3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
	(290)	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
		170시간	120시간
	3)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(215)	·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(70) · 운전이론(25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105시간	110시간
	4) 철도장비 운전면허 (135)	· 철도시스템 일반(20) · 기계·장비의 구조 및 기능 (6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90시간	45시간
	5) 노면전차 운전면허 (170)	·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6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70시간	100시간

\*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
4.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

( ) : 시간

경력	교육과목 및 시간		
	교육과정	이론교육	기능교육
가.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(철도장비의 경우 철도장비운전 업무수행경력 3년 이상)	디젤 또는 제1종 차량운전면허 (290)	· 철도관련법(30) · 철도시스템 일반(20) · 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(100) · 운전이론 일반(20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20)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		190시간	100시간
나.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 경력 2년 이상	1)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(290)	· 철도관련법(30) · 도시철도시스템 일반(30) ·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(90) · 운전이론 일반(25) · 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	· 현장실습교육 ·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 비상시 조치 등

		합) 등(10)	
		185시간	105시간
	2) 노면전차 운전면허 (140)	·철도관련법(20) ·노면전차시스템 일반(10) 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(4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80시간	60시간
다.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	철도장비 운전면허 (100)	·철도관련법(20) ·철도시스템 일반(10) ·기계·장비의 구조 및 기능(4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80시간	20시간
라.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작업경력 1년 이상	철도장비 운전면허 (185)	·철도관련법(20) ·철도시스템 일반(20) ·기계·장비의 구조 및 기능(7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120시간	65시간

\*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.

5.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

( ) : 시간

경력	교육과목 및 시간		
	교육과정	이론교육	기능교육
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	1) 디젤 또는 제1종 차량 운전면허 (395)	·철도관련법(30) ·철도시스템 일반(30) ·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(150) ·운전이론 일반(2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2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250시간	145시간
	2) 제2종 전기차량 운전	·철도관련법(30) ·도시철도시스템 일반(3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

	면허 (340)	·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(90) ·운전이론 일반(2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20)	·비상시 조치 등
		190시간	150시간
	3) 철도장비 운전면허 (215)	·철도관련법(30) ·철도시스템 일반(20) ·기계·장비의 구조 및 기능 (7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130시간	85시간	
	4) 노면전차 운전면허 (215)	·철도관련법(30) ·노면전차시스템 일반(20) 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(7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현장실습교육 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130시간	85시간

\*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.

6. 버스 운전 경력자

( ) : 시간

경력	교육과목 및 시간		
	교육과정	이론교육	기능교육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	노면전차	·철도관련법(30)	·현장실습교육
	운전면허 (250)	·노면전차시스템 일반(20) ·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(70) ·비상시 조치(인적오류 예방 포함) 등(10)	·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·비상시 조치 등
		130시간	120시간

\*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.

7. 일반사항



- 가. 철도관련법은 「철도안전법」과 그 하위법령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.
- 나.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,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운전업무 수행경력이란 운전업무종사자로서 운전실에 탑승하여 전방 선로감시 및 운전관련 기기를 실제로 취급한 기간을 말한다.
- 다. 모의운행훈련은 전(全) 기능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.
- 라.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.
- 마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훈련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철도운전 관련 학과의 정규과목 이수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론교육의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
- 바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교육·기능교육 훈련시간의 합이 가장 적은 기준을 적용한다.